제815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관세청)	1.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제출서류 및 현장조사 실시 (강화)제4조(등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2.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6.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9. 국세납세증명서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가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 심사시 실제운영 여부, 명의대여, 등록요건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1.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 항목 신설 (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국토교통부)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피난계획 검토를 위한 제출서류 항목을 신설 나.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안 [별표2])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난 능력의 평가를 위한 피난계획의 적정성 항목 신설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규칙 신설(신설)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규칙 신설(제23조의3)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범위도 제한 -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계좌에 기록된 결제내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등의 활용범위를 제한	1.비중요
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항목추가(신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	1.비중요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방청)	1.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신설) 수급인(소방시설공사업자)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민간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 방법 및 절차, 미이행시 촉구방법 등을 정함 2.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신설)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환경부)	1.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내 동일시설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인정 요건(신설)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설비로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규정	1.비중요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 자격요건 신설(신설)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갖추고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신설	1.비중요
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행정처분 기준(강화) (신설) 온도조작장치 설치 등 온도기록 조작 금지,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교정, 수송용기 외부에 온도계 설치 및 수송설비에 대한 수송검증 의무화, (강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이용 의무화 등 의약품 도매상의 행정처분 신설·강화	1.비중요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1.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강화)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요양 신청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확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인한다. ③ <삭 제> 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신설)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복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수행 예정 직무 3. 그 밖에 사업주 지원 필요사항 등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신설)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것 2.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재직할 것 3.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갖추고 재활치료 및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기준요건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지정서 2.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단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② 공단은 지정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정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고의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 요구, 질문 또는 서류나 물건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의료기관은 공단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의료업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인력·시설 등이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RPS의무공급비율 조정(강화)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 2027년 이후 25.0%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1	선내의약품등비치기준 제정안 (해양수산부)	1.선내의약품등비치기준(신설) 선내의약품등비치기준(별표1)	1.비중요
1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신설(신설) 도시가스사업자 및 직수입자들의 천연가스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국가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직수입자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사항 규정 2.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사항 추가(강화) 도시가스사업자,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 천연가스 수급현황 관리 및 가스시장의 거래질서 확보를 위한 주요 보고사항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13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환경부)	1.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변경 등(신설) - (제6조, 별표1) 상위법령에서 고시로 위임된 시험방법에 대해 변경 및 삭제·추가(총 11개 항목) 등 현행화 - (제11조, 별표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차대동력계 및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동일하게 준용하며 구체화 2.사후관리 등 제도 보완(신설) - (제11조의3) 자동차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시 검사의뢰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차량으로 시험을 할 수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시험용 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세부 규정 마련 - (제16조,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존에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왔으나 사후관리시 검사방법 규정이 없어 규정을 마련	
1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생태계보전협력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권역지역 추가(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에 따른 지역계수 및 생태자연도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를 함께 반영	1.비중요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요양급여 보상한도 상향(강화)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현행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1.비중요